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05일

발 의 자: 김 경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고광민, 김기덕, 김동욱, 김성준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원태, 김인제, 김춘곤, 김현기, 남창진, 문성호, 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 박영한, 박유진, 박칠성, 서준오, 성흠제, 소영철, 송도호, 송재혁, 신복자, 아이수루, 왕정순, 우형찬, 유정인, 유정희, 이민옥, 이병도, 이병윤, 이상훈, 이성배, 이소라, 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이은림, 이종태, 이효원, 이희원, 임규호, 임만균, 임종국, 장태용, 전병주, 정준호, 최기찬, 최민규, 최유희, 최재란, 한 신, 허 훈, 황철규 의원(58명)

1. 제안이유

- 기존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를 통하여 침수방지시설 같은 단기적 대책이 아닌 반지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여 시민의 주거안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함(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공동주택”을 “공동주택(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노후·불량건축물)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 ·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공동주택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 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<u>공동주택</u>: 별 표 1에 따른 기간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4조(노후·불량건축물) ①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 ----- ----- <u>공동주택(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 동주택은 제외한다)</u>----- 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